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람	기관의장

제634호 2019. 10. 10.(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611호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612호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613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사천시 조례 제1614호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18
○ 사천시 조례 제1615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
○ 사천시 조례 제1616호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3
○ 사천시 조례 제1617호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 사천시 조례 제1618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사천시 조례 제1619호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6
○ 사천시 조례 제1620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 --------- 50
○ 사천시 조례 제1621호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 67
○ 사천시 조례 제1622호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68
○ 사천시 조례 제1623호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 ------ 77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14호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 82
○ 사천시 규칙 제715호 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4
○ 사천시 규칙 제716호 사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 91
○ 사천시 규칙 제717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2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634호

사천시 조례 제161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한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천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와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 지원 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연구단체의 회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활동비를 사용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중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결과는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해산) 신청서

년 월 일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해산)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대 표 자 :
3. 설립목적 :
4. 구성인원 : 명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신청인 회장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동의원	당 초	
	변 경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 타		

신청인 회장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년 월 일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사·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		
연구활동비	지 급 액	
	지 급 방 법	
기 타		

사천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년 월 일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별첨”	
연 구 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기 타			

신청인 회장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 내용	당 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 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연구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특기사항			

신청인 회장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0000년도 000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년 월 일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0000년도 000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결과	결과 요약	
연구활동비	수 령 액	
	집 행 액	
	잔 액	
	세부집행내역	
특기사항		

첨부서류 : 1. 0000년도 000연구활동 결과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정산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신청인 회장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사천시 조례 제161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를 “범위에서 일비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61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 복지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보험료 납입 만료기간(5년) 내 : 계약을 해지하되, 보호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험료 납입 만료기간(5년) 후 :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만기환급 처리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 (제4조제1호 관련)

지원내용	상세내역
임신축하용품	○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산부 등록한 자를 대상 임신축하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 첫째 아 : 3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둘째 아 : 5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 25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출산축하용품	○ 시 관내 출생신고자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2개월
출생아 복지보험료	○ 시와 협약한 업체에 가입되며, 5년간 보험료(3만원 이내)를 지원(15년 보장)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	○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
고등학생 지원	○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 운영 지원금 제외)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단,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개정안>

[별표 2]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제4조제2호 관련)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 두 명 이상의 전입세대는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고등학생 지원	○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운영지원금 제외)
대학생 지원	○ 학기별 1회 100천원 지원
수도요금 감면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 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사천시 자체 서비스		
	[ ] 출산 지원금	[ ] 첫째 자녀(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 출산 기념품	[ ] 아기용품세트 [ ] 둘째 자녀 이상(이름:) 쓰레기봉투
	[ ] 우대인증	가구원성명( )
	[ ] 출생아 복지 보험	관내 거주 기간: 부 : / 모 : ※ 보험료 지원자격 상실안내 : 보험료 지원기간 5년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상실됨. (전출 후 관내 재전입하여도 자격 상실됨.)
	[ ] 유축기 대여	※당일예약제로 운영되며, 보건소 모자보건실(☎831-3527)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분증 지참)
	[ ] 수도요금 감면	[ ] 셋째 자녀 이상 (이름 :) [ ] 수용가명 : 수용가번호 : 감면세대주 성명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아동수당		[ ] 아동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 천 시 공 보

제634호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 의 사 항 ,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및 개 인 정 보 이 용·제 공 동 의 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양육수당 · 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사천시 조례 제161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또는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사천시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61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 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 란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 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사천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 업무 :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읍·면·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1호의 대상을 6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제1항 각 호마다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촉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4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치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라 공개추첨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별표 1에 따른 참석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의논을 하기 위해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공개 등)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설·추석 등 기념일에 위문품 및 기념품 지급
2.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3.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른 모범 위원 및 유공자 표창
4.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의 개최 지원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 ·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주민총회 정족수(제19조제2항 관련)

주민 수*	산출 기준[1]	기준 정족수[2]		비고
		최소	최대	
5,000명 이하	2% 이상	50	80	□ 주민총회 정족수 산정 : 1)산출기준에 따른 숫자가 2)의 최소 정족수 이상, 최대 정족수 이하인 주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5,001 ~ 10,000명	1.5% 이상	80	120	
10,001 ~ 15,000명	1.2% 이상	120	150	
15,001명 이상	1% 이상	150	250	

*주민총회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사례1) 총회 참석대상 주민등록 인구가 9,500명인 A면의 총회 최소 정족수

총회 최소 정족수 = 120명

- 산출내역 : 인구 9,500명 × 1.5% = 143명이나 총회 정족수 모집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20명 기준을 적용

(사례2) 총회 참석대상 주민등록 인구가 5,100명인 B면의 총회 최소 정족수

총회 최소 정족수 = 80명

- 산출내역 : 인구 5,100명 × 1.5% = 77명이나 총회 정당성 확보 및 하위구간 역전 방지를 위해 최소 80명 기준을 적용

(사례3) 총회 참석대상 주민등록 인구가 7,000명인 C동의 총회 최소 정족수

총회 최소 정족수 = 105명

- 산출내역 : 인구 7,000명 × 1.5% = 105명(산출기준[1] 적용)

사천시 조례 제161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사천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법 제3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

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 7백만 원 이하

나. 3급, 4급 : 5백만 원 이하

다. 5급, 6급 : 3백만 원 이하

라. 7급~9급 : 2백만 원 이하

3.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제7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사천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의사상자와의 관계		
의사상자 관련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결정일자		증서번호		
	특별위로금 구 분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등급( )급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	(담당경찰관:) (연락처:)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한 사실 기재	내 용 (적용된 다른 조례)	금 액	지급일자	지급자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천시 조례 제161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회원 10명 이상

(읍·면지역 7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미등록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구 설치·유지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7조(정산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단, 시장으로부터 지정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은 예외로 한다.

② 경로당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미등록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적용 대상 시설)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천시 미등록 경로당 내역

연번	읍면동명	마 을 명	경로당명	소 재 지	비고
1	사천읍	구암2리	방곡경로당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186-21 외 1필지	
2	정동면	동계마을 (유정APT)	유정APT 경로당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71-4	
3	정동면	노천마을	노천경로당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711	
4	축동면	가산마을	가산경로당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21 외 1필지	
5	곤양면	검정마을	검정동부경로당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142-9	
6	동서동	저도마을	저도경로당	사천시 마도동 160-1 외 2필지	
7	동서동	신도마을	신도경로당	사천시 늑도동 556	

사천시 조례 제161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하여”를 “사용·수익허가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고”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고”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3년이내” 를 “5년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관광종합지원시설 중 사천 만남의광장” 을 “관광지원시설 중 사천 만남의 광장” 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관광종합지원시설” 을 “관광지원시설”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용·수익허가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하여” 를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용기간 중 내외 설비” 를 “사용허가기간 중 내외 설비 및”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모든 책임을 진다.” 를 “책임을 질 수 있다.” 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

[별표 1]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면적 (㎡)	시설현황	비고
1	유람선선착장 주차장	사천시 유람선길 42	12,608	주차장 화장실 2동	
2	유람선선착장 음수대	사천시 유람선길 60	3,039	음수대 1식 파고라 9개소 분수대 1식	
3	사천 만남의 광장	사천시 서삼로 1742	9,023	주차장 화장실 1동 휴게음식점 1동 소매점 1동 자동판매기 1동	
4	초양도 휴게소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112	2,782	주차장 공중화장실 1동 휴게소 1동 탐방안내소 1동	
5	삼천포대교공원	사천시 사천대로 17	25,323	주차장 음악분수 1식 모형거북선 1식 공중화장실 2동	
6	사천바다 케이블카 제1주차장	사천시 대방동 492	15,502	주차장 화장실 2동 파고라 1식	
7	진널전망대	사천시 신향2길 140	21,192	전망대 1동 화장실 1동	

< 개정안 >

[별표 2]

주차시설 사용료(제7조제5항 관련)

1. 일반차량

(단위 : 원)

구 분	주 차 요 금			1일 주차요금	비 고
	기본(120분)	120분 초과	15분 초과		
소 형	무료	500	150	5,000	
대 형	무료	1,000	300	10,000	

비고 : 1) 주차요금표는 관광종합지원시설 중 만남의 광장 주차시설에 적용한다.

2) 운영시간은 매일 08:00 ~ 18:00까지로 한다.

3) 주차요금은 무인요금정산기기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한다.

-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 징수

- 운영시간 이후 출차한 차량은 운영시간까지 계산한 주차요금 징수

4) 72시간 이상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한다.

2. 면제차량

가.「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운전차량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관련부서 확인 필)

3. 50퍼센트 감면 차량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차량

나.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사 천 시 공 보

제634호

사천시 조례 제161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협조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2.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

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력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34호

사천시 조례 제162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조사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
11.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

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체장애, 뇌병변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관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보 및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이용부자격자에 대한 이용제한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용부자격자에 대한 결정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이동지원센터 위·수탁관리)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634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 )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이동지원센터 (☎831-3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　○○동 ○○번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애 유 형		□ 영구장애 (　　)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210㎜×297㎜

사천시 조례 제162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62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4.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5. 대출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 횟수는 1회에 한정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및 거주 사항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 한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 체크)	□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집 전화 : 휴대전화 :	
사천시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주택소유 여부 (√ 체크)	□ 무주택
	자 녀	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임차금액(원)			임차면적(㎡)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또는 자녀출산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출생년월일 기준) 자녀를 출산한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전세 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전세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사유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 일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별지 제4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	신청인						전입일자	신청일자	입금계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관계	주 소	연 락 처			성 명	계좌번호 (은행명)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호	신청인						지급금액	신청일	지급일	지급계좌			환수일/사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여)	관계	주소	연락처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시 조례 제162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자 택 : 휴대전화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결혼후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사천시장 귀하

이장 및 읍·면 ·동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적, 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적, 부	담 당 공무원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 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 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주민등록 등본, 농지원부 사본 읍면동에서 첨부

붙임 : 인우보증서 1부.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인 우 보 증 서

1. 피보증인(외국여성과 결혼할 농업인)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2. 보증인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피보증인과의 관계 :

라. 생년월일 :

마.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상기 피보증인을『20 년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서 보증인은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부합됨을 확인하며, 피보증인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이후에 동 부부가 성실한 농업인으로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후견인의 역할을 다할 것을 정히 확약합니다.

20 . . .

인우보증인 (인)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지원금 청구서

1. 사업명 :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
2. 혼인을 이행한 농촌 남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3. 배우자(외국인 여성) 인적사항
   가. 국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연령) :
4. 결혼일자 :
5. 결혼장소 :
6. 결혼 총비용 :
7. 청구금액 :

위와 같이 20 년도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634호

사천시 규칙 제71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규칙 제71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사천시시민상” 을 “사천시 시민상”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시상일 현재 만20세이상)” 을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으로, “10년이상” 을 “10년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본적” 을 “등록기준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상일” 을 “공고일” 로, “2명이상일” 을 “2명 이상일” 로 한다.

별제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추천부문		성 별	남, 여
주요 공적 사항			
추천 사유			

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사천시 시민상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주 소		연 령	
성 명		직 업	
학 력		종사기간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공 적 사 항 : 별지

경력 및 활동사항 : 별지

상 벌 : 별지

과거포상내역 : 별지

210㎜ x297㎜
신문용지 54g /㎡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등록기준지				규격사진 반명함판
주 소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성별	남, 여	
연 락 처				
학 력				
졸업연월일	학 력 사 항			전공분야
주요경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년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상벌 (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년 월 일	상 벌 사 항			비 고

위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 인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제 회 사천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심의보고서

부 분	순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추천사유	비 고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장 (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사천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심의조서

부 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요업적	비고
선 행				
문 예				
체 육				
지역개발				
지역경제				

위와 같이 심의 선정함.

년 월 일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천시 규칙 제71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규칙 제71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08:00~20:00까지로 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방법) ① 주차요금은 무인요금정산기기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 출차한 차량은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차요금의 면제·감면대상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등의 확인증을 무인요금정산기에 투입하여 면제·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6조 중 “이동시킨다.”를 “이동 조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설 >

[별표 1]

주차시설 운영시간(제2조 관련)

명 칭	운영시간	비 고
유람선선착장 주차장	00:00 ~ 24:00	무료
사천 만남의 광장	08:00 ~ 18:00	유료
	18:00 ~ (다음 날) 08:00	무료
초양도 휴게소	00:00 ~ 24:00	무료
삼천포대교공원	00:00 ~ 24:00	무료
사천바다 케이블카 제1주차장	00:00 ~ 24:00	무료